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시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출자출연기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항

을 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출자출연기관과 계약하는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 적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하고, 계약시 이를 대금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